

제19장
최종 규정

제19.1조
일반 검토

1. 양 당사국은, 이 협정의 발효 후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,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, 이 협정의 일반 검토를 수행한다.

2. 이 조에 따른 검토를 수행할 때, 양 당사국은

가.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. 그리고

나. 다음을 고려한다.

1)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업무, 그리고

2) 국제 포럼에서의 관련 진전 사항

제19.2조
개정된 또는 후속 국제 협정

이 협정에 언급되거나 이 협정에 통합된 국제 협정 또는 그 협정의 규정이 개정되거나, 다른 국제 협정이 그러한 국제 협정을 승계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어느 당사국이든 그 요청에 따라, 이 협정의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.

제19.3조
개정

1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.
2. 이 협정의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에 대한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.
3. 개정은 발효할 때까지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제19.4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

1. 양 당사국은 WTO 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준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.
2.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찾기 위하여 즉시 서로 협의한다.

제19.5조 부속서, 부록 및 각주

이 협정의 부속서,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19.6조 발효

1. 양 당사국은 그들의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비준한다.
2.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비준한 경우, 그 당사국은, 그러한 비준부터 60일의 기간 내, 외교 경로를 통하여,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비준, 승인

또는 수락을 서면으로 통보한다.

3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양 당사국이 그러한 비준, 승인 또는 수락을 서로에게 통보한 경우, 이 협정은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.

제19.7조

종료

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고 그러한 종료는 통보일 후 18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년 월 일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. 이 협정의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. 차이가 있는 경우, 영어본이 우선한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

산업통상부장관

투자통상산업부장관